

인증기관 [] 지정 갱신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국적(외국인만 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연월일			
인증업무의 범위	[] 유기농·임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양봉의 산물등, [] 유기가공식품, [] 비식용유기가공품, []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취급자		
	[] 국내() [] 국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3항(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36조(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규칙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	---	-----------------------------------

작성 방법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규칙 제32조 또는 제57조의 인증업무의 범위 중 수행하려는 업무범위를 업무와 지역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